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5. 7. .

제출자 : 하남시장

1. 제안이유

- 조례상 용어 정의를 일원화해 법령 해석의 일관성 확보
- 신규 체육시설 현행화 및 사용료 부과 대상 체육시설 명시

2. 주요내용

- 가. 현행 조례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체육시설’ 과 ‘생활체육 시설’ 을 ‘체육시설’ 로 통합 정의
- 나. 신규 체육시설 조성·인수에 따른 현행화 및 조문 정비
- 다. 사용료 부과 대상 시설을 명확히 규정

3. 개정조례안: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 없음

6.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가. 예고 기간: 2025. 5. 28.~2025. 6. 17.(20일간)
- 나. 의견 내용: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9. 참고사항: 해당 없음

10. 관련부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운영하는 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사용료 등 부과대상 체육시설)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 부과대상 체육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제1항 중 “체육시설”을 “제7조의2의 체육시설”로, “부과·징수한다”를 “부과·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생활체육시설”을 “제7조의2 이외의 체육시설”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체육진흥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팀장 직위·성명	체육지원팀장 김승국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송형요 (031-790-5551)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명칭 및 소재지)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하남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삭 제></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체육시설”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체육활동 목적으로 설치하여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p> <p>2. “생활체육시설”이란 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실외 체육시설을 말한다.</p> <p>3. ~ 12. (생략)</p>	<p>제3조(정의) ----- -----.</p> <p>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운영하는 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p>
<p><신 설></p>	<p><삭 제></p> <p>3. ~ 12. (현행과 같음)</p> <p><u>제7조의2(사용료 등 부과대상 체육시설)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 부과대상 체육시설은 별표 1과 같다.</u></p>

제8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 및 이용자에게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부과·징수 한다.

② 생활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여건 및 이용실정을 감안하여 공공요금 및 유류비 등 시설 이용에 필요한 경비에 한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⑧ (생략)

제8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

----- 제7조의2의 체육시설 -----

----- 부과·징수한다.

② 제7조의2 이외의 체육시설 ---

③ ~ ⑧ (현행과 같음)

[별표 1]

사용료 등 부과대상 체육시설(제7조의2 관련)

시 설 명	소 재 지	비 고
하남종합운동장	아리수로 600(망월동) 일원	
하남국민체육센터	아리수로 600(망월동) 일원	제1체육관 포함
하남종합운동장 제2체육관	아리수로 600(망월동) 일원	
선동둔치체육시설	선동 287-3 일원	
풍산멀티스포츠센터	덕풍북로 160(덕풍동)	
덕풍스포츠문화센터	역말로 71(덕풍동)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감이동 451	
위례복합체육시설(가칭)	학암동 649(예정)	
감일근린공원3호 체육시설 축구장	신우실로 149-4(감이동) 일원	

[별표 2]

전용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시 설 별		사용구분		사 용 료				비 고
				체 육 경 기		체육이외 행사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주경기장	육상장(트랙)	주 간		30,000	40,000			. 기본 사용시간 2시간 . 야간 사용시 조명(라이트) 시설 사용료는 별도임
	축 구 장	주간	일반	100,000	200,000	400,000	600,000	
			만18세 이하	50,000	100,000			
축구장(면당) (인조잔디 경기장)		주간	일반	50,000	100,000	150,000	200,000	
			만18세 이하	25,000	50,000			
실내 체육관		주 간		150,000	200,000	250,000	300,000	
인라인스케이트장		주 간		60,000	80,000	-	-	. 기본 사용시간 4시간 . 야간 사용시 조명(라이트) 시설 사용료는 별도임
테니스장(면당)		주 간		15,000	25,000	-	-	. 기본 사용시간 2시간 . 야간 사용시 조명(라이트) 시설 사용료 별도임
농 구 장(면당)		주 간		30,000	50,000	-	-	. 기본 사용시간 4시간
족 구 장(면당)		주 간		30,000	50,000	-	-	. 기본 사용시간 4시간
수 영 장		주 간		-	600,000	-	-	. 기본 사용시간 4시간 . 전 레인 사용 기준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10퍼센트는 별도임. ○ 축구장의 라인마킹은 사용자가 함. ○ 체육시설의 전기사용료는 실제사용료를 부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사용료 산출기초 : 실제사용료(전력사용량×kw당가)+부가가치세 10퍼센트 - 전기사용 kw당 단가는 한국전력공사 고시단가를 적용한다. ○ 주경기장의 육상장, 축구장을 모두 사용시 각각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육상장, 축구장 전용사용자가 다를 경우 경기.연습.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용사용을 허가함. ○ 기본사용시간에 관계없이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봄. ○ 관외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는 사용료와 이용료를 50퍼센트 이상 할증하여 징수한다. ○ 수영장은 매월 2, 4째주 일요일 주간에 한하여 대관한다. 						

[별표 3]

이용료(제8조제1항 관련)

1. 주경기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기준	이 용 료		비 고
			개인	단체	
주경기장	육상경기장		개인제한	전용료 준용	
	축구장		개인제한	전용료 준용	
보조경기장			개인제한	전용료 준용	
실내체육관			개인제한	전용료 준용	
테니스장(면당)			개인제한	전용료 준용	
선동 야구장			개인제한	전용료 준용	
선동 축구장			개인제한	전용료 준용	
감일 축구장			개인제한	전용료 준용	

2. 수 영 장

(단위 : 원)

구 분	월 회 원(자유이용)			1일 회원(1회)			단 체		
	어 른	노 인 청소년	어린이 유 아	어 른	노 인 청소년	어린이 유 아	어 른	노 인 청소년	어린이 유 아
금 액	60,000	50,000	40,000	3,000	2,500	2,000	2,500	2,000	1,500
비 고	○ 월 자유이용은 주 6회 기준임 ○ 1일 회원의 경우 1일 2시간 기준임 ○ 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인사용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음								

3. 헬스장, 에어로빅장(월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헬스장, 에어로빅	어 른	60,000
	노인·청소년·어린이	50,000

4.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용료

(단위 : 원)

시설별	사용구분		사 용 료
인라인 스케이트장	1인 1일	이용구분 없음	1,000
	월 회원	이용구분 없음	10,000

5. 강습프로그램 운영

(단위 : 원)

구 분	강 습 료
강습프로그램	○ 강습교실은 주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금액은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강습료를 조정할 수 있음

6. 이용료, 강습료의 할증 및 감액

1. 이용료 할증

- ① 1일 이용 시 토·공휴일은 25퍼센트까지 할증하여 징수할 수 있음.
- ② 관외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는 사용료와 이용료를 50퍼센트(수영장 200퍼센트) 이상 할증하여 징수한다.

2. 이용료 할인

- ① 1일 2종목 이상의 복합 이용 시에는 각 이용료 합계 금액의 20퍼센트까지 할인할 수 있음.
- ② 장기 등록 선납일 경우 할인할 수 있음.
(3개월 납부 5퍼센트, 6개월 납부 10퍼센트, 12개월 납부 15퍼센트까지 할인)
- ③ 동호회, 클럽에 한해 1년 이상 장기 계약할 경우 30퍼센트 이내 강습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테니스장에 한함)
- ④ 그린카드 사용 시 10퍼센트 할인 적용

3. 부가가치세 10퍼센트는 별도임.

4. 그 밖의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

방송 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T V		라 디 오	
			국 외	국 내	국 외	국 내
중계 방송	체육 경기	축 구 장	100,000	60,000	50,000	30,000
		실 내 체 육 관				
		인라인스케이트장				
		수 영 장				
		보 조 경 기 장				
	체 육 이 외 행 사		150,000	100,000	100,000	60,000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회 기준이며 기본사용시간 4시간임. ○ 부가가치세 10퍼센트는 별도임. 					